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54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조정훈 · 서천호 · 윤용근

김용태 · 최수진 · 박충권

김미애 · 강승규 · 김대식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자녀를 위하여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아동교육비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아동 양육·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18세 미만인 원칙이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됨.

그런데 자녀의 대학 입학·졸업 시기가 늦어지거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교육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자녀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22세”를 “24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22세”를 “24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의 2에 따라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및 제13조제1항제2호의 아동교육비 자금 대여의 신청을 한 경우와 제17조제1호의 아동 양육·교육 서비스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생활지원시설(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지원시설에 한한다)의 입소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u>22세</u>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5. ----- ----- <u>24세</u> ----- ----- ----- -----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u>22세</u>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	3. ----- ----- <u>24세</u> ----- ----- ----- ----- ----- -----

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하는 시설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